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2일, 정부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 8. 23.)

상정, 의결(원안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

□ 정부가 제출한 3개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과 1개의 일부 개정법률안은 복지위 소관 15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조문을 분리 신설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1]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제8조 제4호[2]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1) 〈헌법재판소(2019헌바118) 보충의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임을 근거로 "동 조항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음[3].

□ 또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음[4].

□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라는 규정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축소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이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한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2019헌바171(병합), 2019헌바1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것으로 보임.

□ 다만, 위 헌법소원에서 일부 재판관은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 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형의 선고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7개 부처 소관 2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 5개의 법률안[5]을 제출하였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 15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이 1개 법률안으로 제출[6]되었으나, 동 법률안은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이에 정부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과 1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국회에서 제출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①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② 「국가공무원법」, 「관세사법」[7] 등 실형·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정하는

5) 일괄개정 방식 5건(환노위 1건, 외통위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여성가족위 1건)

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3973호, 정부, 2021.12.17.)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우리 위원회 소관 개별법 정비 대상 현황 >

법안	정비대상 법률	소관부처	법률안 형식
1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부	일괄개정
2	약사법		
3	의료법		
4	노인복지법	복지부	일괄개정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장애인복지법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약처	일괄개정
11	의료기기법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14	화장품법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약처	일부개정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 한편, 동 법률안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76조제1항[8]에서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8. (생략)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7. (생략)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또한, 동 법률안들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는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9], ② 재판확정 후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 사람[10], ③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 등이 포함됨.[11]

□ 그런데, 일반 국민의 경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8)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9)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0)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의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의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됨

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법문의 표현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중 ③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12]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동 법률안들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집행이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의원)

원안대로 의결함

12)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조(「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

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를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를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6. (생 략)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6. (현행과 같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6조(결격사유) ---. 1. ~ 3. (현행과 같음) 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第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u>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u>	2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제3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후단 신설>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① · ② (생 략)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③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